2018 년 연말정산 안내문

1. 연말정산 대상자 : **2018 년 12 월 31 일 기준 캡스텍 재직 근로자(2018 년 12 월 31 일 퇴사자 포함)**

2. 서류제출 기한 및 연말정산 등록 마감일

- 서류제출 마감일 **: 2019 년 01 월 25 일까지 본사 우편 접수**
- 연말정산 프로그램 등록 마감일 : **2019.01.25 까지 등록**

*** 연말정산 프로그램 등록 방법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간소화자료조회-> 각항목 클릭 -> 한번에내려받기클릭

② https://tax.adtkorea.com 인터넷 주소 접속 후 로그인

(ID:캡스텍 사번/PW:생년월일 6 자리) (접속은 2019.01.21 부터 가능)

접속 후 기초정보 확인 -> 종전근무지 확인 후 해당사항 클릭 -> 국세청파일(PDF)업로드 ->부양가족등록

국세청PDF파일반영 -> 추가자료 있는 경우 공제정보 수기 등록 -> 동의 후 제출 클릭

3. 제출 서류(필수)

1) 연말정산 서류제출 표지

2)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해당 증빙 서류)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서류제출에 1 부 &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서류제출 1 부 각각 발송

3) 국세청 연말정산 증빙서류 출력물

4) 2018 중도 입사자의 경우 : 타회사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타회사와 합산 신고가 되지 않으면 2019 년 5 월에 근로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 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과태료)가 부가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장애우 지원수당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지원수당 신청서 1 부 및 장애인증명서 1 부 본사 별도 우편발송

5. 연말정산 관련 & 프로그램 등록방법 관련 상담 센터

- 운영일자 : 2019 년 1 월 21 일 ~ 2019 년 1 월 25 일
- 시 간 :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전화번호 : 02-6310-4340~4347

6.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우측 상단에 사번 및 근무사업장 기재요청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에 1 부 넣어 제출
- 장애우 지원수당 대상자는 장애우지원수당신청서&장애인증명서 각각 1 부 제출

7. 보내실곳

연말정산 서류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 길 36 OTC 타워 2 층 (주)캡스텍 연말정산 담당자 앞(135-873)**

장애우지원수당 서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 번지 정석제 1 빌딩 ADT 캡스 5 층 HR 운영팀 이승협 (135-090)**

8. 문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캡스텍홈페이지(www.capstec.co.kr) - 전화번호 : 02-3485-9669

2018년 연말정산 서류제출 표지

소속명	캡스텍	사 번		성 명	
근무지		연락처			

■ 제출서류

해당 제출서류에 기록 요망

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1) 본인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일반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주택_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_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소기업·소상공인

(2) 부양가족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를 신청하는 부양가족의 성명을 기록)

일반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기부금

Ⅱ. 간소화서비스 이외의 자료

(1) 본인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장애인 증명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2) 부양가족 (제출하는 항목에 "○" 표시)

장애인 증명서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기타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2018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2018.01.01 ~ 2018.12.31	감면기간	~
거주구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정공제 항목 변동 여부	[ ] 전년과 동일 [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 신청 [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 120% [ ] 100% [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적공제 및 소득 · 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고용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 명)						국세청	-	-	-	-	-
						기타	-	-	-	-	-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인적공제 / 각종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내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국세청	-	-	-	-	-	-	-
		기타	-		-	-	-	-	-
0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관계코드 5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1948. 12. 31.)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 · 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 · 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		
Ⅲ.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상환대출					
				기타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장석방법 참조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 (합계)					-		
Ⅳ.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장석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장석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장석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장석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투자조합 출자 등	2016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장석방법 참조	
					벤처 등				
		2017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장석방법 참조	
					벤처 등				
		2018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장석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 (①+②+③+④+⑤+⑥)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장석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장석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장석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V.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 정부간 협약 [ ] 기술도입계약 [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제종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의료비 계		-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택유형*		계약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		연간 월세액			
		※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장애우 지원수당 안내문

1. 목적 : 장애직원에 대한 수당금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

2. 지원대상 (캡스텍직원)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직원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소지한 직원

3. 수당 지원 기준

구분	수당금액
장애(경증,중증)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연 1회 / 20만원

4. 제출서류
   1) 장애인 증명서 원본 (사본 가능) / 국가유공자증 사본 (상이 국가유공자 해당) 중 선택 제출
      *장애인 증 사본 접수 불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인정일 확인을 위해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 요청 (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2)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5. 지급시기
   11일자 급여 - 3월 11일 / 28일자 급여 – 2월 28일 / 7일자 급여 – 3월 7일 (매년 1회)

6. 제출방법
   본사 인사팀 우편 접수

7.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8-9번지 정석제1빌딩 ADT캡스 5층 HR운영팀 이승협앞 (135-090)

8. 연락처
   02-3485-9211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상기 본인은 장애우 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하며,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장명	사번	성명
장애/상이 종류 및 등급 (예:지체장애 6급/ 공상군경 7급)		
연락처		**특이사항**

*** 첨부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2018년 연말정산서류 제출에 장애인증명서 1부 제출**
- **장애우 지원수당 신청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1부 더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금 · 저축 등 소득 · 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 연도	투자 구분	조합면(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불입급액과 소득 · 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 란은 벤처 (조특법 제16조제1항제3호·4호·6호) 와 일반 (조특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월세액 ·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 금액(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월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22)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21)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23) 임대인 성 명 (상 호)	(24)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25) 유형	(26) 계약 면적(㎡)	(27)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28)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29) 전세 보증금(원)
						개시일	종료일	

※ (25) 유형 : **구분코드** - 단독주택 : 1, 다가구 : 2, 다세대주택 : 3, 연립주택 : 4, 아파트 ; 5, 오피스텔 : 6, 고시원 : 7, 기타 : 8

※ (26)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방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 · 세액공제애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 · 월리금상환액과 소득 · 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25)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29)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찰합니다.)

작 성 방 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 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X"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비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금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X"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정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	⑥ 신용카드	⑦ 현금영수증	⑧ 직불·선불카드 등	⑨ 도서공연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만 기재)	⑩ 전통시장 사용분	⑪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자료	-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						
				그밖의 자료	-						
⑤-1 합 계 액					-	-	-	-	-	-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 도서·공연사용분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⑨X30%)	⑬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X40%)	⑭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금액 (⑪X40%)	⑮ 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재금액 (⑦+⑧)X15%	⑯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X15%)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⑰-1 총급여	⑰-2 최저사용금액 [(⑰-1)X25%]	⑰-3 공제제외금액

⑱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⑯-(⑰-3)]	⑲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⑰-1)X20% 중 적은 금액]	⑳ 일반 공제금액 (⑱과 ⑲ 중 적은 금액)	(21) 도서·공연 추가 공제금액 [⑱>⑲인 경우에 ⑱-⑲과 ⑫(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22)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⑱>⑲인 경우에 ⑱-⑲-(21)과 ⑬(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23)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⑱>⑲인 경우에 ⑱-⑲-(21)-(22)과 ⑭(한도:100만원) 중 적은 금액]	(24) 최종 공제금액 (⑳+(21)+(22)+(23))

⑰-3 계산

구 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 X 15%	
⑥+⑦+⑧+⑨ ≥ (⑰-2) > ⑥	⑥ X 15% + [{ (⑰-2) - ⑥ } X 30%]	
(⑰-2) > ⑥+⑦+⑧+⑨	⑥ X 15% + (⑦+⑧+⑨) X 30% + [{ (⑰-2) - ⑥-⑦-⑧-⑨) } X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수수료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1부 및 승차권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없음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i.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ii.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분			기부처		⑫ 기부자			기부명세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⑦ 유 형	⑧ 코드	⑨ 기부 내용	⑩ 상호(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⑬ 합계 (⑭+⑮)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⑮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⑯ 기타
정치자금	20											

iii.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계	공제대상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계	-	-	-	-	-	-	-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그외	-							

iv.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				
				-				
				-				
				-				
				-				
				-				
				-				